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08
----------	-----------

제출년월일	2013. 01. 18.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의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제외규정을 두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 하여야한다.

다. 지원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라. 지원제외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재난지원금 지급,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3천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2. 27. ~ 2013. 0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호우·강풍·대설·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과 년 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2010년	2111년	2012년						
세출	도 비									
	군 비	0	0	193	60	60	60	60	60	300
	소계(a)	0	0	193	60	60	60	60	60	300
세입	도 비									
	지방세									
	소계(b)									
총비용(a-b)		0	0	193	60	60	60	60	60	300

3. 관련 의견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5.23)에 따른 국고에서 지원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 100이상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재난지수 300 ~ 100이상 피해농가 지원액을 반영하여 비용추계 : 318농가 57백만원

작성자 : 재난관리과장 이 동 순